

# 2023년도 제11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5. 17.(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노정동(분과위원장), 김경숙, 김성주, 최진원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102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524건(안건번호 제2023-37749호~39272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3-37749호(순번 1번)는 블로그에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게시한 사안으로, 링크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37750호~37752호(순번 2번~4번)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37753호~37761호(순번 5번~13번)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511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3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총 770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건번호 제 2023-10511호~11280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3개에 접속할 수 있는 770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결과 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노정동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11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3-102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노정동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과 관련하여 위원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

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제1호 안건의 해당 부분은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함.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위원명 등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 3. 안전상정

####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노정동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2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2,301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블로그에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직접링크를 게시한 사안임. 1개 게시물임.

(순번 1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소프트웨어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해외 서버의 링크를 게시하고 있으며, 본문에 설치 방법을 안내하고 있음.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되는 설치 파일은 제품인증키가 자동입력되도록 되어 있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고 있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링크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 B 위원: 제품키가 따로 필요 없는 형태인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설치파일을 조작하여 제품키가 바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임.

- B 위원: 순번 1번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 A,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번~4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블로그에서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경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총 5개 게시물임.  
(순번 2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웹툰 불법복제물 제공 해외사이트로 바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게시하고 있으며, 최신 대체 URL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것이 예상됨.  
(순번 3,4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웹툰 불법복제물 제공 해외사이트 등 최신 대체 URL을 제공하는 알림 사이트의 주소를 각 제공하고 있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오진해 전문위원: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해외사이트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함.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작지 아니하므로, 각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 A 위원: 시정권고의 대상은 블로그 게시물인데, 여기서 링크모음 사이트를 한 번 더 거쳐 불법복제물 제공 사이트로 이동하는 두 단계를 거쳐야 함. 마지막의 불법복제물 제공 사이트를 곧바로 차단하는 것은 어려운가?
- 오진해 전문위원: 본건과 같은 형태의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는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의 대상이기도 한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의 연결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임. 최신 대체사이트 링크를 제공하는 게시물들에 대한 제재가 계속하여 요구되는 상황이고, 이미 동일 사례가 다수 누적되어 있음. 불법성이 소명된 불법복제물 제공 해외사이트로의 링크게시물 중 시정권고로서 처리할 수 있는 국내 OSP의 게시물에 대해 불법복제물 링크게시물과 같은 ‘저작권 침해 정보’의 논리를 적용하여 시정권고 가결 의견을 드리고 있음.
- C 위원: 순번 2번~4번은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작지 아니하므로, 각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 A, B, D 위원: 가결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번~4번은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5번~13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대학 교재 또는 문제집의 스캔 파일을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총 10개 게시물임.  
(순번 6번 및 9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 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들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을 스캔한 PDF 파일을 판매하고 있음. PDF 파일은 이메일 또는 채팅을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보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직접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지는 않으나, 게시물을 통해 연락을 취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1 채팅 등을 통하여 불법복제물을 판매하고자 함. 즉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고 그로부터 영리를 얻고자 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



제물등”에 해당할 수 있음.

앞선 사정 및 판매중인 불법복제물이 각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함이 타당함.

- D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함.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A, B, C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5번~13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14번~1524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2,288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출판, 만화, 게임, SW를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순번 14번~1524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B,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4번~1524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37749~37752호(순번 1번~4번)는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37753호~39272호(순번 5번~1,524번)는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11쪽부터 14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0511호~11280호(순번 1번~770번)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 노정동 분과위원장이 제11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11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5. 24.

분과위원장 노정동

위원 김경숙

위원 김성주

위원 최진원